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4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강서구 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3조)
- 나.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
- 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시설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28. ~ 2022. 10. 18.)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구적인”을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을 “육성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용역 지원”을 “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완화와 관련한 지
역경제 활성화 육성 및”을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
의 제3호) 중 ““재산권의 회복”이란”을 ““재산권의회복”이란”으로, “지원
하는”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물제한표면”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기
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
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
2. “공항고도제한”이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장애
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고도제한완화”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항공학적검토”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과도한 공항”을 “공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활동지원) 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지원
4. 그 밖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명칭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7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를 구청장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람”을 각각 “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 중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 개최 등)”을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수행하며”를 “수행하고”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 지원) 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회복과 <u>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u>용역 지원</u> 2. (생략) 3. 공항 고도제한 <u>완화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및 지원</u> 4. (생략)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항 고도제한</u>"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 및 「건축 	<p>제1조(목적) ----- ----- ----- ----- <u>지속가능</u> <u>한</u> ----- -----.</p> <p>제2조(기본방향) ----- ----- ----- <u>육</u> <u>성 및</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용역</u> 2. (현행과 같음) 3. ----- <u>완화를 통한</u> <u>지역개발</u> ----- -- 4. (현행과 같음) <p>제3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애물제한표면</u>"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

법」에 따른 고도지구안에서
의 건축 제한을 말한다.

2. “고도제한 완화”란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
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재산권의 회복”이란 공항 주
변의 건축물 높이가 일률적으
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
하여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
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

2. “공항고도제한”이란 건축물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고도제한완화”란 장애
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이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4. “재산권의 회복”이란 -----
-- 하는 -----

-----.

5. “항공학적검토”란 「공항시
설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
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 공항 -----

-----.

② -----

----- 하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활동지원) 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지원
4. 그 밖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제6조(기능) <신 설>

(생략)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명칭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생략)
3.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에서 이동>

우에는 그 직의 재임 중 기간으로 한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

1. -----
소관업무 담당과장-----
-----.
2. (현행과 같음)
3. -----
----- 자
4. -----
-- 자
<삭 제>
5. -----
----- 자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 중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조신설 2017.9.28, 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삭 제>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제9조(위원회 지원) 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청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수행하고 -----
-----.

<삭 제>

제13조(경비 등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 제15조 (생략)

<삭제>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예상 소요 비용: 4,2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매년): 약 4,200천원(30명*70,000원*2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과장 홍재정

(담당: 행정8급 김예지 / ☎ 2600-1739)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29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도시계획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강서구 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3조)
- 나.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
- 라.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관련 용어 정비,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활동지원 규정 신설, 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7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김예지	전화번호 02-2600-17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도시계획과장 귀하			

1)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또는 제7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2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의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